

제344회 정례회
2015.12.16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23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4일

3. 제안이유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정 시행(2015.7.1.)에 따라, 사회복지위원회의 명칭, 기능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

4. 주요내용

- 제명 개정 : “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” 를 “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 로 개정
- 위원회 기능, 구성 개정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9조)
-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추가, 보완
- 관련조례 개정(부칙) :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, 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 등 개정

5.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·시행(2015.7.1.)에 따라,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함.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,

- 1) 기존 '사회복지위원회' 명칭을 '사회보장위원회'로,
'지역사회복지계획'을 '지역사회보장계획'으로 변경하고,
- 2) 안 제2조에서,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0조제2항에 따라 변경하였으며,
- 3) 안 제3조에서,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'30명 이하'에서 '40명 이하'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고,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임명·위촉 대상 조건을 변경하였으며,
- 위원회 구성원 중 “충청북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”은 존치함.
- 4) 회의소집을 위해 해당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통지할 경우, 기존 7일 전까지였던 통지 기간을 5일 전까지로 축소하고, 통지 방식도 서면으로 규정하였음.
- 5) 또한 부칙 조항으로,
- 「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8조와 「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」 제11조의2제2항 중 “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”로 변경토록 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다른 조례에 명시된 “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”로 동시에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동 조례안 부칙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에 있어,
- 「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와 「자활기금 조례」 개정만을 명시하였는데, 아래 제시된 4개 조례의 개정도 명시토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.

- ①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6조
- ②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
- ③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
- ④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2조